

\* 안녕하십니까. 김혁봉입니다. 2020. 12. 9.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아직 공포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공인회계사 1차시험 범위에 개정법률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된 사항을 두 페이지로 요약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일단 자료를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과 공인회계사 1차시험 반영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공지하겠습니다.

### 1. 다중대표소송 신설 (제406조의2)

(1) 의의 : 다중대표소송이란 지배회사(모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 임원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말함 / 이중대표소송(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추궁)뿐만 아니라 삼중대표소송(손자회사 임원의 책임을 추궁), 또는 그 이상을 포함하는 개념

(2)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원고적격 : 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 1만분의 50(= 100분의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일 것 / 모회사가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모회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일 것

(3) 모자관계의 판단 : 제소 후 모회사의 지분율이 자회사 주식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단, 원래는 B회사의 모회사였던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는 예외 (⇒ 이때는 이미 제기했던 다중대표소송이 부적법각하!)

### 2. 대규모상장회사의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을 담당할 이사의 분리선출 (제542조의12 제2항 단서)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데<sup>1)</sup>, 다만 이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해야 함 (= '일괄선출'을 '분리선출'로 변경!)

### 3. 대규모상장회사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결의에서 의결권제한 (제542조의12 제4항 : 2조원 이상)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위의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음)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 (~ 대기업들이 감사위원분리선출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임!)

더 나아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위의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에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까지 합산해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의 의결권이 제한됨<sup>2)</sup> / 반면에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주주가 가진 주식만으로 100분의 3을 계산해서 그 초과 부분만 의결권이 제한됨<sup>3)</sup>

1) 머리글자 암기법 “대규모 감원 필충위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2) 예컨대, 최대주주가 15%, 그의 특수관계인(ex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15%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 30%의 주식 중 27% 주식의 의결권이 없어지게 된다.

3) 즉,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가진 주주라도 최대주주가 아닌 자는 위 각주 2)번의 '특수관계인과의 합산'이라는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4. 상장회사 감사의 선임·해임 결의에서의 의결권제한 (제542조의12 제7항 : 자산규모 불문함)

상장회사가 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결의를 할 때에는 위의 목차 3과 동일하게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됨 / 예컨대,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주식까지 합산해서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의 의결권이 제한됨

5. 대규모상장회사에서 전자투표로 감사위원 선임결의를 할 때의 정족수 (제542조의12 제8항)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회사가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전자투표 결의를 할 때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선임결의가 통과됨<sup>4)</sup>

6. 상장회사에서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선택가능성 (제542조의6 제10항 신설)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 제542조의6의 권리<sup>5)</sup>를 행사할 때에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sup>6)</sup>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sup>7)</sup>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

7.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 방식을 일원화함

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상법 제350조 제3항을 삭제함 ⇨ 한 영업연도 중간에 발행된 신주<sup>8)</sup>에 대해 이익배당을 할 때, 이익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라면 구주의 주주와 신주의 주주를 불문하고 동액배당(=균등배당)을 하면 됨<sup>9)</sup> / 중간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도 마찬가지임

\* 개정법률을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자료의 목차 1~7의 내용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만약 2021년 시험에 출제된다고 해도 이 자료 두 페이지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 제 강의를 수강한 분들은 꼭 각주를 읽으십시오.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 개정법률 내용을 신구조문대조표로 뒤에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표를 읽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에게는 목차 1~7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특히 밑줄 친 부분의 문구가 지문으로 나올 것입니다.

4) 즉, 일반적인 총회보통결의의 요건인 ㉠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 and ㉡ ‘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는 것이다.

5) **임·제·열·해·검·유·대**의 일곱 가지 소수주주권을 말한다.

6) 필요한 지분비율이 1천분의 15, 1만분의 1, 1만분의 10, 1만분의 50 등으로 비상장회사의 경우보다 대체로 낮게 규정되어 있으나, 그 대신에 6개월 보유기간이 필요하다.

7) 필요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으로 상장회사보다 대체로 높게 규정되어 있으나, 그 대신에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8) 통상의 신주발행과 그 밖의 신주발행(= 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주식배당, 스톡옵션 행사, CB의 전환권 행사, BW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9) 한 영업연도 중간에 신주가 발행된 경우, 과거에는 (우리 강의시간 중의 암기법으로 말하자면) “막대 움직임” 방식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와 “정관有균등배당, 정관無일할배당가능”의 공식으로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져서 상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기업체의 실무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다. 이제 상법개정 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즉, 이익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에게 동액배당을 하면 되는 것이다.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第324條(發起人の 責任免除, 株主의 代表訴訟)  <u>第400條와 第403條 乃至 第406條의 規定</u>                      은 發起人에 準用한다.</p> <p>第340條의5(準用規定) 第350條第2項, 第350條                      第3項 後段,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제                      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                      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第350條(轉換의 효력발생) ①·② (생 략)</p> <p>③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 또는 제3                      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구를 한 때 또는 제34                      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                      로 할 수 있다.</p> <p>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생 략)</p> <p>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                      09조제2항·제3항 및 제542조의12제3항·                      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                      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                      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第394條(理事와 會社間의 訴에 관한 代表) ①                      會社가 理事에 대하여 또는 理事가 會社에                      대하여 訴를 提起하는 경우에 監事는 그 訴</p>	<p>第324條(發起人の 責任免除, 株主의 代表訴訟)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                      06조의2는-----.</p> <p>第340條의5(準用規定) 제350조제2항-----                      -----                      -----                      -----.</p> <p>第350條(轉換의 효력발생) ①·② (현행과 같                      음)                      &lt;삭 제&gt;</p> <p>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제40                      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                      -----                      -----.</p> <p>第394條(理事와 會社間의 訴에 관한 代表) ①                      -----                      -----</p>

에 관하여 會社를 代表한다. 會社가 第403條第1項의 請求를 받음에 있어서도 같다.

② (생략)

第401條의2(業務執行指示者 등의 責任) ①다음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그 지시하거나 執行한 業務에 관하여 第399條·第401條 및 第403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理事로 본다.

1. ~ 3. (생략)

② (생략)

<신설>

----- . ---- 제403조제1항 또는 제406조의2제1항의 請求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

② (현행과 같음)

第401條의2(業務執行指示者 등의 責任)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 ①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자회사가 제1항의 請求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자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관하여는 제176조 제3항·제4항, 제40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4조부터 제4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請求를 한 후 모회사가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하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자회사의 본점소재

제408조의9(준용규정) 집행임원에 대하여는 제382조의3, 제382조의4, 제396조,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400조, 제401조의2,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 제412조 및 제412조의2를 준용한다.

第409條(選任) ① (생략)

② 議決權 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의 總數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數의 株式을 가진 株主는 그 초과하는 株式에 관하여 第1項의 監事의 選任에 있어서는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

③ 會社는 定款으로 第2項의 比率보다 낮은 比率을 정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第415條(準用規定) 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條, 제388條, 第400條, 第401條와 第403條 乃至 第407條의 規定은 監事에 準用한다.

第423條(株主가 되는 時期, 納入懈怠의 效果)

① 新株의 引受人은 納入 또는 現物出資의 履行을 한 때에는 納入期日의 다음 날로부터 株主의 權利義務가 있다. 이 경우 第350條第3項 後段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③ (생략)

第461條(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 ⑤ (생략)

⑥ 第350條第3項 後段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408조의9(준용규정) ----- 대해서는 -----  
----- 제402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第409條(選任) ① (현행과 같음)

② -----  
-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를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

③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과 같음)

第415條(準用規定) -----  
-----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  
-.

第423條(株主가 되는 時期, 納入懈怠의 效果)

① -----  
-----  
----- <후단 삭제>

②, ③ (현행과 같음)

第461條(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삭제>



⑦·⑧ (생략)

<신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략)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그 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할 때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⑧·⑨ (현행 제7항·제8항과 같음)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

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신설>

<신설>

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⑧ 회사가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